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9호 2010. 10. 25.(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9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0호 폐소형가전 운반·처리 사업자 모집 공고 -10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 1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1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검암소공원) 실시
계획인가 열람·공고 ----- 13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1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4호 폐기공인 공고 ----- 1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5호 인천광역시서구 효도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안)----- 15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55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료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료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사료관의 내부규정의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자의 장, 사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은 녹청자 및 도예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수탁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료관의 선임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정원) 사료관의 직원은 관장, 운영요원 3명, 사무원, 안내원 등 6명으로 하고, 필요시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용 등) ①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한다

제11조(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입,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로 하고, 이하 직원은 60세로 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요건) 사료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직원의 사무) 사료관 직원의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보수) ① 사료관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사료관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1. 관 장 : 4급
 2. 운 영 요 원 : 6급부터 5급까지
 3. 사 무 원 : 9급부터 8급까지
 4. 안 내 원 : 계약직
- ③ 직원의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경력 인정은 총 10호봉을 넘지 못한다.
- ④ 사료관 직원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복무) 사료관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재원) 사료관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한다.

제17조(회계 관리) ① 사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사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료관 회계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료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이 사료관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료관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사료관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② 사료관 물품 및 장비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

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예산) ① 수탁자의 장은 다음 연도 사료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확정 후 수탁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수탁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3. 위원회 회의록 사본
4. 사업실적 보고서

제21조(보조금 관리) ① 수탁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료 및 수강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
3. 다자녀 우대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자녀

제23조(자체운영규정)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인) ①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 직인
 2.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제12조 관련)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관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도자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박물관 및 사료관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서구 문화발전에 5년 이상 기여한 사람
운 요 영 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도자기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대학의 도자기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중 도자기 교실에서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도예작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시설관리공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안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사람 (만20세 이상)

[별표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구 분	사 무 명
관 장	○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업무 총괄
운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실 운영 계획 수립 ○ 가스 가마 및 전통 가마 관리 ○ 도예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날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 도자기 특강 운영 ○ 가마소성 ○ 이용고객 및 민원관리 ○ 소방계획 수립 및 방화관리, 안전관리 ○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운영
사 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안, 청소, 환경관리 ○ 사료관 물품관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금 납부 및 실적관리
안 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안내 ○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안내판 관리

[별표 3] 직원의 경력 인정(제14조 관련)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을 경력(8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병 경력(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개인이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별표 4] 공인(제23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인

3cm	
인천광역시서구 녹청자도요 지사료관장인	3cm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위원장인

3cm	
인천광역시서구 녹청자도요지사 료관운영위원장 인	3cm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범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범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범인소계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97mm×210mm)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2년이면 사업년도별(2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취득세팀)
 우편번호 : 404-701

※ 문의사항 전화 : (032) 560-421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6조의11(납세지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②

산출지방소득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세율
- | | |
|---|---|
| 기 | 타 |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
- ①

소득세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 |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인원광역시	서구	동	번지	호	사업장명			
							① 소	② 산출		
구분 월별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세	납부액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납	합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297mm²×210mm²)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㉓)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㉔-㉖))	②정당 세액 (㉗)	기납부 세액 (㉘)	납부 일자	차인세액 (㉙-㉚)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㉕)					

(297mm²×210mm²)

※ 서식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지방소득세 증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 >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 초과소득	연장														
	차량														
③ 종합소득	관리														
	생산														
④ 기타소득	수시														
	계														
과세표준															
⑤=(㉑-㉒)															
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⑦×(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297mm×210mm)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잠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함

나.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10조)

- 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제26조)
- 라.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47조)
-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8조부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0-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인천광역시 서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송달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하고 시세나 구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구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하거나 예탁한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9조(구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20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 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7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채납자
2. 채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채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채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채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공유물에 대한 채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채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채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4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5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6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채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채납

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 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8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구세 및 채권

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0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채납처분

제41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 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채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 중지기간 연장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채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4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 청구인 ·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
 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 ·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 부과·징수 처리 절차 및 장부상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26조)

나. 구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5조)

다. 체납자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부터 제94조)

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5조부터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2010-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한 구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분으로 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의 송달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부 등의 관리) 제6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4.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 구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절 부과·징수

제10조(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구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구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구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

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4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과목 : 별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주소

가. 개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재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6. 과세대상 : 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건축물면적·차량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구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7조에 따른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세목에 대한 세액을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 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납부 구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서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구세의 수납) ① 구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납과 징수관의 명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

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구세 수납내역의 확인점검)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의 부과·신고 및 납부내역과 구금고 수납내역의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점검하고 불일치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구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 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

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조회 등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구세를 납부한 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지방세관계법·조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촉탁 등)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등에 따른 소재 확인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의 확인

② 부과철회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경우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 철회

회를 할 수 없으며, 부과 철회 후 다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 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한다.

제26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구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구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

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구세환급금

제2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세를 구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구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구세환급금은 체납된 다른 구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구세의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구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지급한다.

1.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구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구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구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구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63조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년도의 구세환급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같은 연도내의 구세환급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구세환급금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징수부 및 세입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구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구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구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 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 납세담보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납세자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유예등 정리부(법 제8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를 작성·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등을 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등”이라 한다)의 재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의 재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연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법 제85조제1호에 따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구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세 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구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36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조례 제29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 절차

제37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영 제105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2. 압류조서
3. 수색조서
4. 봉인용지
5. 보관증 용지

제38조(수색)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체납자 재산압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 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41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류재산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채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채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갑, 을)에 따른다.

제3절 압류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채납된 구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채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함에도 질권자가 해당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라 질물의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갑,을)
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5.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갑,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급청구권의 지방세환급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등록)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① 세무공무원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인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9조(부동산의 분할·합병·변경의 등기촉탁) 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 자동차·건설기계·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구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 체납자의 압류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완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채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채납자의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할 관서에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

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57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구세채납액의 교부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 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따라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 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당받거나 충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 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구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구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구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각

제59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매광고) ① 공매광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관보·시보·일간신문에 광고하거나 구청·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보를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따른다.

②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에서 평가한 가액을 매각예정가격 결정에 참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농작물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무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51호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매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

은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8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년월일·신구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 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에 무체재산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73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공매연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 내용을 별지 제60호서식의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귀속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청산

제75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체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77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별지 제64호서식)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그 밖에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

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65조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 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경우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그 밖에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조례 제38조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76조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협지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같은 기간 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9절 결손처분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추적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따른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따른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주주조사
4. 취학아동·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따른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그 밖에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결산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금융회사 점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결손처분의 결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70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93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9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

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전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전별 심사결정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시장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구청장의 의견

제98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8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전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세법 중 ‘등록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정된 사항과 기타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9조)

- 나. 현행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21조)
- 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3조)
- 라.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부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0-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장의 면적 ·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세율) ①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해당 시의 동(洞)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洞)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제25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서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3개의 법률로 분법되고, 지방세의 일부 세목이 통·폐합됨에 따라 전면 재정비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세목 분야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지방세법 중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12조)
- 나. 현행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
- 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9조)

라.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2010-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

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도(다른 자치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금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허취소(정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따라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1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경우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경우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0호

『폐소형가전 운반·처리 사업자』 모집 공고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폐소형가전 운반·처리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 고 명 : 「폐소형가전 운반·처리 사업자」 모집 공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2년 12월
- 사업내용 : 서구 관내 폐소형가전 31개 품목 운반·처리
- 조 건
 - 운반·처리대행료는 무상이며, 수탁업체는 서구청에 수거량의 kg당 100원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서구청이 정하는 수량크기,형태에 맞는 수거함을 제작 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수거대상은 지정수거함내 서구청이 정한 폐소형가전31개 품목에 한한다.

3. 신청대상

- 인천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재활용 전문)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10. 11. 8. (20일간)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처 : 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422)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서식1]
-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서식3]
- 참가업체 경영실태(최근3년간) [서식4]
- 사업조직 편성체계 [서식5]
- 사업수행 관련 시설·설비 현황 [서식6]
- 제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선정방법

-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8. 선정결과 공고 : 개별통보(지자체 통보)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가신청서
 2.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4. 참가업체 경영실태(최근3년간)
 5. 사업조직 편성체계
 6. 사업수행 관련 시설·설비 현황

[붙임2]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붙임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사업명	수행업무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붙임4]

참가업체경영실태 (최근 3년)

구 분	D-2년도	D-1년도	D년도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당기 순이익			
7.총매출액			
9.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0			
11.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2.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100			

[붙임5]

사업 조직 편성 체계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붙임6]

사업수행 관련 시설·설비 현황

시설·설비명	용도	사양	수량	비고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붙임6]

폐소형가전 31개 품목

연번	품명	규격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모든 규격	17	전화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리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풍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수기	모든 규격	2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8	청소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수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뎀	모든 규격
11	가스오븐렌지	높이 1m미만	27	캐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합기	모든 규격
14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전기및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법률 제10219~10221호, 2011.1.1시행)됨에 따라 2011.1.1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 조례의 경우 2010.12.31.일몰적용으로 20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현행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내용을 제

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원육성촉진지구, 인천항만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1.1.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 (안 제8조)

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는 데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20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

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 칙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

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복지서비스과(560-49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사회복지시설)
 - 【명칭】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3. 사업의 규모 : A(연면적) = 2,5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을 위한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구의 책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 안 제4조)
-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안 제7조)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의 실시
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2. 아동의 등하교길 도우미 사업
3.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제15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검암소공원)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검암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검암소공원)
 - 【명칭】 검암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A = 640.5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시 거주지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출산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제1조, 제4조) 개정
 - 기존 : 제1조 '신생아'를 대상, 제4조 '부모'를 대상
 - 변경 : '부모'를 대상으로 통일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제한 (제4조) 개정
 - 기존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중인 자 지원
 - 변경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의2) 신설
 - 신설 :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출산입양 지원 정책이 국가 또는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축하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와 영유아를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후”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셋째 이후 자녀출산·입양 축하금”을 “자녀출산·입양 축하금”으로 하며, “입양 및 셋째 이후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를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영유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이를 축하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첫째 이후 쌍둥이일 때에는 제2조 제4호에 불구하고 1사람만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출산 축하금의 경우 쌍생아는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만 지원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만 거주하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 서로부터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1년이 경과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 지원신청 안내는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거주기간 1년 미경과자는 1년 경과일 기준) 60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축하금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제7조제2항 중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그 다음달”을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출산·입양 지원정책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구 부담비율에 한하여 지원하는 등 축하금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0년 10월 22일 ~ 2010년 11월 22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인천81마1421외 23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0년 11월 22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관내 폐차장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바.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끝.

2010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소유주	소유주 주소	차량번호	차종	압류 및 저당권자(이해관계인)
715	김종구	인천 서구 신현동 161 16/2 나동 401호	인천81마 1421	봉고 프 런티어	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 인천서 구청[교통행정, 교통민원, 환경위생, 세무, 환경보전], 인천중구청[교행], 광진구청[교지], 마포구청[교통지], 국민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자격징 수부], 동대문구청[교통지], 인천시 청[교통관리과], 인천서구시설관리 공단[주차환경팀].
718	정영열	충북 청주시 산척면 송강 리1805-12	28버5325	크레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자 격징수부], 인천계양구청[교통행 정], 인천남동구청[교통과], 인천서 구청[교통행정, 세무, 환경보전, 교통 민원], 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 광영시청[지도민원과], 충북충주시 청[세정과]
721	강봉선	인천 서구 석남동 502-13 아카시아빌라	인천73노 5206	이스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 급], 인천연수구청[지교], 광영시청 [교행], 인천남동구청[교통과], 인천 시청[교통관리과], 인천중구청[교통 행정], 안성시청[교통행정과], 인천 서구청[환경위생, 환경보전과], 인천 남동구청[주차관리과]
724	이기술	인천 서구 석남동 556-46 한양빌라 6동 101호	인천35러 8690	리오 SF	인천서구청[교통행정], 인천서부경 찰서[경비교통, 환경보전과, 교통민 원과, 세무과], 삼성캐피탈(주)
726	김흥복	인천 서구 연희동 703 대명파크빌라 8동 B01호	79머4538	갤로퍼 승합	인천서구청[세무, 환경보전, 교통민 원], 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 김 포시청[교통과], 근로복지공단 인천 북부지사[납부지원부]

728	(주)신안주 택관리	인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용품상가 36-301	인천31도 2266	카니발 LPG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직 관], 인천동부경찰서장[경비교통], 인천시청[교지, 교통관리과], 근로복 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 국민연 금관리공단 남인천지사[가일], 인천 세무서[징세], 인천동구청[세무, 민 원, 교통과, 환경위생], 인천남동구청 [세무, 민원, 교통과, 환경위생], 인천 남동구청[교통],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19479], 종로구청[교통지 도], 강남구청[교통지도], 강화군청 [경제교통], 인천중구청[교행], 용인 시 수지구청[산업교통], 인천남부경 찰서[경비교통], 인천부평구청[교통 행정과], 인천중부경찰서[경비교 통], 송파구청[자동차관리과]
729	박현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 지구 3블럭7-4-3롯데 그린하우스 3동 402호	80노7662	포터초장 축더블캡	광명시청[세무과], 구로구청[주차관 리과], 인천서구청[세무과], 국민건 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수부]
733	최명희	김포시 북편동 292-2	경기67나 6621	스포티지 그랜드	양천구청[지교], 김포시청[세정과, 환경위생과, 차량관리, 환경보전과, 교통지도과, 교통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포지사장[징수팀], 김선아 [김포시 북편동 688번지 대우@101 동 1101호]
734	송진우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 리 692-9호	강원28도 9136	마티즈	강북구청[교통지도], 철원군청[세무 과], 현대캐피탈(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735	(주)대림정 보시스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9 대일빌딩 2층	대전80라 9254	그레이스 6번	대전중부경찰서[교통], 근로복지공 단 대전지역본부장[징수], 대전중구 청[환경보전과, 교통행정, 세무], 국 민연금관리공단 동대전지사장[동대 전 직장고객팀], 부천시 원미구[경 제교통], 성북구청[교통지도], 대전 차량등록사업소[차등], 중랑구청[교 통지도], 노원구청[교통지도], 양천 구청[교통지도], 은평구청[교통지 도]

736	장언년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7 경남A 311동 101호	인천32거 3084	EF소나타 LPG	서울중구청[교지], 동작구청[교지], 용산구청[교통지도], 인천부평경찰서[경비교통], 부평구청[환경위생, 교행], 서울시청[교통지도], 인천시청[교통관리], 고양시일산구청[건설교통], 양천구청[교통지도과], 인천계양구청[교통행정], 고양시덕양구청[도시미관과], 영등포구청[주차문화과], (주)금화상호신용금고[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18호 20], 안은순[인천 남동구 구월동 1371-6]
737	박유억외 이경애	인천 서구 가좌동 272-12 현대빌라 가동 101호	07너6202	로체	용인경찰서[경비교통], 수원시영통구청[건설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7카단53963],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지사[보험급여부], 용인차량등록사업소[차사], 용인시처인구청[세무과], 인천시청[교통행정], 인천서구청[교통행정], 인천중구청[교통행정], 대우캐피탈(주)[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호]
739	구본근	인천 서구 가정동 203 효정A A동 902호	인천14라 5070	콘크리트 믹서트럭	인천서구청[세무], 인천지방법원[99타경182727, 2003카단11481], 동양시멘트(주)[인천서구원창동332-10호]
741	장흥태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 번지 247호 20/3 백운빌 라 302호	인천80마 7363	와이드 봉고	인천부평구청[환위, 교행, 환경보전과, 세무], 성동구청[교통지도]
747	장세석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3 번지 11호(21/3)	서울51다 6564	크레도스	금천구청[세관, 교지, 교행, 환경과], 관악구청[교지], 서울시청[주차계획과], 과천시청[지역경제, 산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카단128488], 광명시청[교통행정], 동작구청[지교], 진주시청[교행], 인천시청[교지], 서울남부경찰서[경비교통], 인천계양구청[교행], 인천남구청[교통], 인천부평구청[교통행정]
748	함자인터 내셔널-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 번지 110호 306호	서울43고 4769	쏘나타투 2.0	서대문구청[교지], 영등포구청[교지], 마포구청[세무1과], 마포경찰서[교통]
749	설 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12-6호	27루1297	엑셀 오토매틱	인천계양구청[교통행정, 세무, 환경위생], 원미구청[건설과], 부평구청[교통행정], 인천남구청[교통]

750	주-넷서너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번지 1호	서울37가 3322	그랜저	강동구청[세관, 산업환경, 민원봉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징수], 강동경찰서[교통], 부천시청[교통지도], 평택시청[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자징], 동대문구청[세무2과, 교통행정], 서울강동세무서[징세과], 삼성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
751	김영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5번지 26/7 대림아파트 3동 606호	서울47더 9645	엔터프라이즈	영등포구청[세관, 교지, 교행], 강남구청[교지], 서울중구청[교지], 동작구청[교지], 영등포경찰서[교통], 고양시일산구청[산업], 부산부산진구청[교통], 부산강서구청[도시], 김해시청[교통행정], 국민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752	신황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4 모아A 2동 606호	광주1러 8495	엘란트라	없음
753	삼호무역(유)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44번지 3호(상품용)	87구1130	코란도	없음
754	(주)가원기업	인천 부평구 십정동 396-7 3층	인천80고 4596	갤로퍼밴	인천중구청[교행], 인천동구청[환경위생], 부평구청[교통행정, 세무, 환경위생, 건설행정],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징수], 인천남동구청[교통], 계양구청[교통], 인천지방법원[사건2007카단10150], 인천서구청[교통행정], 인천시청[교통관리]
755	URTNASAN UUGANBAYAR	경기 오산시 서동 462-1	30두3404	소나타투	오산시청[세무, 교행], 서울중구청[교통지도], 강서구청[주차관리], 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
756	BUI VAN GIANG	인천 부평구 청천동 70-193 성숙금숙	86도6209	붕고프런티어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1144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폐 기 사 유 : 공인마모, 인증기 고장,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폐기 연월일 : 2010.10.20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참조”

폐기 공인 인영

연 번	폐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	검단1동장인	2.1X2.1		공인 마모로 폐기
2	신현원창동장인/민원인전용2 (인증기용)	2.0X2.0		인증기 고장으로 공인 폐기
3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민원전용2(인증 기용)	2.5X2.5		인증기 고장으로 공인 폐기
4	인천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분임경리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X1.8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폐기 공인 인영

연 번	폐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6	인천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7	인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분임징수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8	인천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물품운동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9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분임경리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10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X1.8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폐기 공인 인영

연 번	폐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1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12	인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분임징수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13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물품운동관인	2.0X2.0		2010.10.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5호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온데 존경을 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효도수당 지급 기준

- ▷ 자 격 : 만 8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 거주기간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관내 1년이상 계속거주자

○ 효도수당 지급

- ▷ 금 액 : 연 100,000원
- ▷ 지급시기 : 설날 및 추석(각 50,0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설날과 추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일에 5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30일전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기준일 15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도수당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임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5일전까지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연락전화 :)			
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가족사항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자와의 관계 :)</p> <p>(※ 지급대상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통장사본(본인이 신청할 경우 제외)				
※ 담당자 확인란	<input type="checkbox"/> 본인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관계인(인천광역시 서구청 직원 포함)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0. 7. 1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조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인용 조항의 개정에 따라 복무선서를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며, 비밀엄수 규정도 명문화하여 신설함
(안 제2조 및 별표 1, 별표 1의2, 안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 등이 조례에서 중복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동 조항을 삭제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신설
(안 제18조의2 및 별표 5)

-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함
(안 제19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함
(안 제20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을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함
(안 제23조 및 별표 3, 안 제24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조항의 일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1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유서식, A4용지)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095 총무과) 또는 Fax(560-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인(직원 포함)의 경우 전자문서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접수가 가능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정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6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6차)
2. 사업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42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10. 10. 22. ~ 2010. 11. 8.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0. 10.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4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0. 7.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가. 대 상 : 2010. 1. 1 ~ 6.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
- 나. 필 지 수 : 1,962필지
- 다. 결정내용 : 필지별 m²당 가격
- 라.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토지정보서비스」

2. 이의신청

-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나. 신 청 기 간 : **2010. 10. 30 ~ 11. 30.**
-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라. 제 출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구 토지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비치)
 -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민원서식」 란에 게재
- 마.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 바.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0년 11월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